

연구 04-01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방안(하)

—개정법률안—

조성봉 외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방안(하)

—개정법률안—

1관1쇄 인쇄/ 2004년 1월 14일

1관1쇄 발행/ 2004년 1월 19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좌승희

편집인/ 좌승희

등록번호/ 제13-5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 3771-0001(대표), 3771-0057(직통) / 팩스 3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4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BN 89-8031-290-3
89-8031-288-1(전2권)

8,000원

* 제작대행: (주)FKI미디어

발간사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도 22년이 넘었다. 본래 경제기획원 내의 한 부서로 출범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후 국무총리소속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되었고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등 계속하여 그 위상이 높아졌으며 그 권한도 커졌다.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여러 권한 외에도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을 통하여 대기업을 규제하고 부당내부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 제좌추적권을 갖추며 경제규제개혁과 기업구조조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고 국제적으로 시장이 개방된 글로벌경쟁체제하에서 우리의 공정거래정책도 보다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미 전문규제기관들의 탄생으로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서의 규율질서도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우리의 공정거래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개별적인 시장과 산업을 정의하지 않은 채 규모만을 중심으로 규제하는 것이 과학적인 경쟁정책적 규제인가? 과연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를 정당화할만큼 특수한 것인가? 공정거래법에 나타나는 대기업집단 기준의 근거는 무엇인가? 보다 근본적으로 차별적인 규제는 경쟁이 아니라 경쟁자를 보호하는 규제가 아닌가? OECD는 2000년에 발간한 우리나라에 대한 규제개혁 보고서를 통해서 대기업규제를 지양하고 경쟁정책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 속에서도 공정거래 당국은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필요성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왔다. 소유분산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제시

하였다가 다시 업종전문화를 통한 대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인 비용축소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필요성이 변천해 가는 것은 본질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정책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공정거래 당국은 재론의 여지없이 경쟁정책에 그 정책목표를 두어야 한다. 경쟁력 없는 대기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은 치열한 경쟁환경에 노출시키는 경쟁정책을 통해서이다.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여러 시장규율 장치에서 궁극적으로 한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선택이 작동하는 상품시장이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경제개발기를 거치면서 제한된 금융부문과 자본시장의 한계를 넘어 지금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도 그나마 수출을 통하여 치열한 국제시장에 노출됨으로써 경쟁력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경쟁의 과정은 어쩔 수 없는 차별화의 과정이다. 경쟁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부상하고 비효율적인 기업도 도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역동적 경쟁환경은 오히려 사라져가고 있다. 이것은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다각도로 시행된 평등주의 함정(egalitarian trap)에 빠진 경제정책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아닌 공정거래법이다. 30대그룹의 대기업을 규제하였던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으로 인하여 하위 30대 그룹들간에는 역설적으로 30대그룹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경쟁”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규모와 성향이 다양한 30대그룹의 투자행위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다 보니, 기업전략의 다양성을 죽이고 미래산업 개발의 역동성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5년여 기간의 경제력집중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은 더 심화되었다. 또한 대기업의 성장을 억제함으로써 오히려 대기업을 수요자로 해서 유기적 관계 속에 성장도 도모해야 할 중소기업 자체가 정체를 면할 수 없게 되는 역설적인 결과

도 초래되었다.

본 보고서는 공정거래정책을 올바른 궤도로 올려놓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근본적인 개정방안을 담고 있다. 경쟁정책의 강화와 함께 이를 과학화하고 그 집행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그 권한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은 인원·조직·예산을 늘리고,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대기업규제를 강화하며, 제좌추적권 등과 같은 불필요한 집행수단을 확보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은 경쟁정책을 올바르게 시행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신뢰에서 오는 규제권위의 확립을 통해서 제고되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본원의 여러 연구위원을 비롯하여 외부 필진이 다수 참여하였다. 주요 주제별로 아홉 편의 논문이 집필되었고 이를 기초로 공정거래법의 전면개정 방안을 『경쟁법』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작성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률개정안은 여러 전문가의 검토와 토론을 수차례 거친 것이다.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여러 제안과 문제제기와 반론을 가급적 모두 검토하여 보았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잠정적인 타협안이나 중간단계로서의 법개정안을 작성하기보다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여러 차례의 전문가 토론을 거쳐 작성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방안에 대하여 2003년 10월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방안에 대한 발표회와 라운드테이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 세미나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유익한 논의와 제언을 반영하였다. 공정위의 감사원 형태로의 재정립, 범위반 사실 공표제도의 폐지, 공정거래위원 선임방식의 개편, 전속고발권 제도의 폐지, 공정거래위원수의 축소 등은 이 세미나에서 제기된 논의를 반영한 것이다.

이 연구를 총괄한 본원의 조성봉 선임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본원의 황인학 연구조정실장과 법경제연구센터의 이인권 선임연구위원, 최충규 연구위원, 김현중 연구위원께서 본 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토론의 시간을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린다. 그리고 주제별 연구를 맡으신 건양대 김진국 교수, 동의대 이재우 교수, 서강대 임준환 교수, 서울대 장승화 교수 그리고 본원의 서정환 연구위원, 이주선 선임연구위원, 한현옥 연구위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경쟁법」 초안을 검토하고 귀중한 조언을 주신 한양대 이철송 교수와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편 방안을 공동집필하고 발표해 주신 홍익대 김종석 교수에게도 감사드린다. 한편, 한국규제학회 정책세미나를 기획하신 한국규제학회의 최병선 회장을 비롯한 여러 임원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정책세미나의 좌장을 맡아주신 연세대의 정갑영 교수와 토론을 통하여 귀중한 제언을 하신 공정거래협회의 김 용 회장, 김&장 법률사무소의 신광식 고문, 한국개발연구원의 연태훈 연구위원, 바른법률사무소의 임영철 변호사, 숭실대의 전삼현 교수, 건국대의 최정표 교수께 감사드린다. 또한 본원의 원내 세미나에서 주제별 논문에 대하여 귀중한 논평을 해 주신 여러 토론자들과 논문의 개선에 큰 역할을 하신 여러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자료정리와 원고작성 그리고 세미나준비에 도움을 준 문혜연 연구조원, 김선희 연구조원에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한국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2004년 1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승희

목 차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방안(하)

—개정법률안—

제1장 올바른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방향 / 김종석·조성봉 11

- I. 공정거래법의 의의와 목적 13
 - 1. 기업지배구조와 시장규율 메커니즘의 개요 13
 - 2.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수단 16
 - 3. 경쟁정책과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18
- II.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 19
 - 1. 법이 지향하는 목표를 선명하고 투명하게 일원화 19
 - 2.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력집중 억제 관련 규정의 삭제 19
 - 3. 산업정책과 관련된 내용 삭제 21
 - 4. 경쟁정책의 강화 및 과학화 21
 - 5. 경쟁정책 집행저변의 확대 22

제2장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방안—설명자료— 23

- I. 법령과 목적 25
 - 1. 법령의 개정 25
 - 2. 법의 목적 26
- II. 시장구조의 개선 28
 - 1. 가격남용 및 출고조절행위 금지의 삭제 28
 - 2. 기업분할 청구권제도 도입 30

3. 임원겸임을 기업결합 규정에서 제외	31
4. 지주회사규제의 삭제	32
III. 경제력집중 억제 관련 조항의 삭제	39
1. 상호출자 금지조항의 삭제	39
2. 출자총액제한규제의 삭제	42
3. 계열사 채무보증제한 규제의 삭제	49
4.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의 삭제	51
5.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의 삭제	54
IV. 산업정책 관련 내용의 삭제	57
1. 중소기업 업종으로의 기업결합 제한 삭제	57
2. 부당공동행위 제한의 산업정책적 예외의 삭제	59
V.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개선	62
1.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기준을 경쟁 및 소비자 중심으로 변경	62
2. 불공정거래행위 적용에서 합리의 원칙기준 적용	63
3. 부당내부거래 제한의 삭제	69
VI. 경쟁정책 집행저변의 확대	76
1.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회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76
2. 금지청구권의 도입	78
3. 사적 소송의 도입	79
4. 형사처벌 대상범위의 축소와 전속고발권의 폐지	81
5. 범위반 사실 공표명령제도 폐지	84
제3장 경쟁법	91
제4장 공정거래법 신·구조문 대비표	129

그림 목차

● 제1장

<그림 1> 다중적 기업지배구조	13
<그림 2> 기업지배구조 메커니즘의 분류	15

제1장

올바른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방향

김종석/홍익대학교·조성봉/한국경제연구원

-
- I. 공정거래법의 의의와 목적 / 13
 - II.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 / 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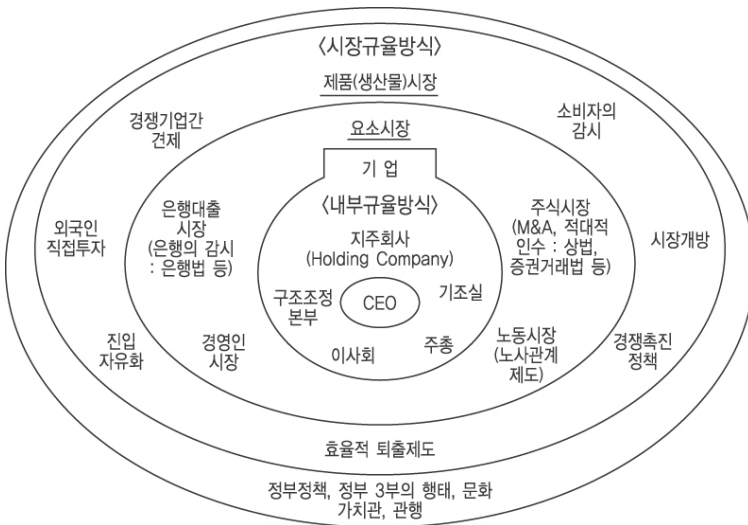
I. 공정거래법의 의의와 목적

1. 기업지배구조와 시장규율 메커니즘의 개요

○ 기업지배구조의 구분 : 외부규율 및 내부통제

- 기업지배구조의 수단은 크게 외부규율방식(external discipline)과 내부통제방식(internal control)으로 구분됨.

〈그림 1〉 다중적 기업지배구조¹⁾



- 1) 기업지배구조를 외부시장규율 메커니즘과 내부통제기능으로 구분하는 이와 같은 분류는 『진화론적 재벌론』(좌승희, 1998), 『IMF체제하의 구조조정정책의 점검과 과제』(황인학 외, 1998),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안』(전경련, 2002. 6.) 등에서 제시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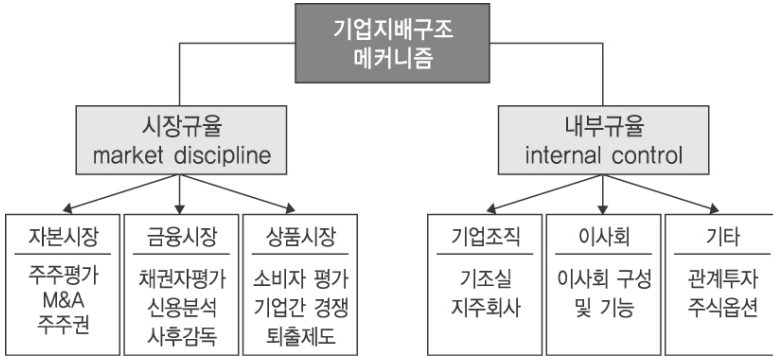
- 외부규율방식은 기업조직의 외부, 즉 시장에서 경쟁과 선택 competition and choice의 원리를 통해서 경영진을 규율·견제하는 수단을 의미하며, 시장규율 메커니즘 market discipline mechanism으로 불리기도 함.
- 내부통제방식은 대주주,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가를 포함한 주주와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가 직접적으로 기업의 방향과 경영성과를 감독하는 기능을 의미함.

○ 외부규율이 발현되는 경로²⁾

- 자본시장
 - 선택의 주체 : 주주
 - 규율방식 :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식의 매매를 통한 주가의 변동으로 기업을 평가하고 의결권행사, 주주제안, 대표소송 등 다양한 주주권 행사와 M&A를 통해 기업경영이 주주의 이해에 합치되도록 경영진을 견제
 - 관련 법규 : 증권거래법과 유가증권 관련 법규 및 상법
- 금융시장
 - 선택의 주체 : 채권자/금융기관
 - 규율방식 : 부실대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행하는 신용평가 및 대출심사과정 또는 대출자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행하는 사후감독과정을 통해 경영진을 감독·견제

2) 논의의 범위와 필요성에 따라 여기에 노사관계와 노조의 감시 등 노동시장에 의한 시장규율 등이 추가될 수 있음.

〈그림 2〉 기업지배구조 메커니즘의 분류



- 관련 법규 : 은행법과 은행업감독관련 법규,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감독규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증권투자신탁업법

- 상품시장³⁾

- 선택의 주체 : 소비자
- 동종기업간 경쟁, 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통해 경쟁력이 상실된 기업을 퇴출시키고 효율성이 큰 기업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경영진을 견제
- 관련 법규 : 공정거래법

3) 여기서 유의할 점은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에서 경쟁하는 은행이나 증권회사와 같은 사업자들도 나름대로의 ‘상품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면에서 은행, 증권회사 같은 사업자들도 상품시장 규율메커니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임. 즉, 규율메커니즘으로 분류되는 금융·자본·상품시장은 상품의 종류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생산활동의 프로세스에 따른 분류임.

2.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수단

○ 기업과 정부의 역할 분담

- 기업의 역할 : 기업은 주어진 경제환경과 외부적 시장규율의 작용 속에서 내생변수로서 내부규율방식을 선택함. 이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될 수밖에 없음.
- 정부의 역할 : 정부는 내부규율방식에 대한 규제보다는 외생변수인 기업관련 법·제도의 개혁을 통해 시장규율방식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외부적 시장규율의 특성

- 자본 및 금융시장 규율방식
 - 주주 및 채권자가 경쟁력을 보유한 적절한 사업자를 선택하고 선택의 결과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이를 위해 사업자의 정보가 제대로 주주와 채권자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기업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의 확보에 집중
- 상품시장 규율방식
 - 소비자가 상품시장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 시장의 집중도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는 경우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상위의 지배적 사업자를 선별적으로 규제

○ 외부적 시장규율 역할분담의 중요성

- 외부적 시장규율은 이처럼 나름대로의 특성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이한 규율방식이 동일한 법제도, 정책수단 및 정책당국을 통하여 혼재된 방식으로 집행되는 경우 의도된 시장규율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외부적 시장규율, 특히 자본 및 금융시장과 상품시장은 서로 상이한 법제도, 정책수단 및 규제기관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사례 1> 내부거래 중 자금·자산·인력의 지원행위 규제
 - 자금·자산·인력의 지원행위는 상품시장의 규율제도인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제되고 있음.
 - 그러나 자금·자산·인력의 지원행위는 상품시장의 경쟁과는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기업정보의 흐름과 투명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규율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하는 문제임.
 - 문제점 : 경쟁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상품시장에서의 경쟁행위를 오히려 제한
- <사례 2> 편중여신 규제
 - 편중여신 규제는 금융시장의 규율제도로서 은행법과 감독규정 그리고 보험업법, 종금사법, 상호저축은행법, 신탁법 등에서 여신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용되고 있음.
 - 그러나 편중여신 규제는 많은 경우 여신운용의 다양화와 위험회피 목적보다는 재벌에 대한 여신편중의 수단으로서 상품시장의 지배적 기업에 대한 선별적 규제방식을 따

르고 있음.

- 문제점 : 금융시장의 건전한 여신운용을 오히려 제한

3. 경쟁정책과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의 일반집중도를 완화하기 위한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개별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경쟁정책이 혼재되어 있음.
- 공정거래법의 나아갈 방향 :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경쟁정책은 활성화시키되 시장규율 효과를 왜곡시키며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폐지되어야 함.

Ⅱ.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

1. 법이 지향하는 목표를 선명하고 투명하게 일원화

- 현재의 공정거래법은 분배문제, 경제력집중의 억제와 같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목표가 경쟁촉진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혼재되어 있으며 법이 지향하는 목표와 우선순위가 정연하지 않고 절제되어 있지 않음.
- 공정거래법이 지향하는 목표를 경쟁촉진으로 일원화하여 법이 목표로 하는 바를 선명하게 제시하고 법의 집행력과 공정거래당국의 규제권위를 강화

2.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력집중 억제 관련 규정의 삭제

- 공정거래법은 상품시장, 자본시장, 금융시장, 노동시장 등에서 다양한 시장규율 메커니즘 중에서 상품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규율 메커니즘임.
-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 다른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음. 또한 경제력집중 억제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부정적인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현 공정거래법의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정책은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의 규제와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에 위임하고 상품시장의 경쟁촉진에 집중
 -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구체적 수단은 지분제한, 출자제한, 의결권 제한, 부채비율 유지, 채무보증 등 대부분 소유지배구조와 금융건전성과 관련되어 있음. 이에 따라 이를 보다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타 부처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국, 영국, 독일, EU 등 해외 선진국의 공정거래법은 상품시장의 경쟁촉진만을 관장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는 해당 전문 규제기관에 일임하고 있음.
 - OECD가 1999년에 발간한 우리나라 규제개혁 보고서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정책에 집중하고 금융 및 자본시장 관련 규제는 전문 규제기관에 넘기도록 권고하고 있음.
 - 유일하게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을 부분적으로 시행하였던 일본도 2002년에 이를 폐지하였음.

- 지주회사규제 등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정책은 기존의 금융 및 자본시장의 관련 규제를 엄정하게 적용하고 집행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한편, 필요시 회사법과 금융 및 자본시장 관련 법규를 보완하고 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임.

- 현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중 자금·자산·인력의 지원행위는 본질적으로 대주주와 다른 주주간의 문제이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의 문제로 금융 및 자본시

장의 전문 규제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상품 및 용역의 계열사간 내부거래로 인한 경쟁제한의 문제는 별도로 규정할 필요 없이 기존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정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음.

3. 산업정책과 관련된 내용 삭제

- 현재의 공정거래법은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경쟁정책과는 무관하거나 오히려 상반될 수 있는 산업정책적 고려를 시행하고 있음.
- 공정거래법이 지향하는 경쟁정책을 선명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와는 무관한 산업정책적인 내용을 삭제함.

4. 경쟁정책의 강화 및 과학화

- 공정거래당국이 경쟁제한적인 시장구조와 행위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개별시장에서의 독과점적 구조개선
: 기업분할 청구권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평적 시장지배력에 대한 강력한 개선수단 동원
- 불공정거래행위의 심사기준을 경쟁 및 소비자 중심으로 변경하고 합리의 원칙 적용을 확대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정

밀하게 분석하여 경쟁제한 행위와 경쟁행위를 구분하여 경쟁 촉진적 규제를 실시

5. 경쟁정책 집행저변의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며 전 공정거래위원의 상임위원화로 전문성 강화
- 사소私訴와 사적금지청구권제도를 허용함으로써 경쟁촉진을 위한 압력이 다양한 각도와 이해계층에서 제기되도록 경쟁정책 집행저변을 확대
- 비현실적인 형사처벌의 대상범위를 대폭 축소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집행저변을 확대

제2장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방안 -설명자료-

-
- I. 범명과 목적 / 25
 - II. 시장구조의 개선 / 28
 - III. 경제력집중 억제 관련 조항의 삭제 / 39
 - IV. 산업정책 관련 내용의 삭제 / 57
 - V.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개선 / 62
 - VI. 경쟁정책 집행저변의 확대 / 76
-

I. 법령과 목적

1. 법령의 개정

(1) 공정거래법 현황 및 근거

- 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본의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의 제목과 내용을 상당부분 그대로 수용

(2) 개정 사유

- 공정거래법의 가장 중요한 취지인 경쟁촉진과 상품시장의 경쟁여건을 규정한다는 것을 강조
- 공정거래법을 ‘경쟁’개념을 중심으로 한 질제되고 강력한 법으로 규정

(3) 개정안

- 법령 : 「경쟁법」

2. 법의 목적

(1) 공정거래법 현황 및 근거

- 제1조(목적) :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1986년 제1차 공정거래법 개정>

- 헌법 제119조 제2항 :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2) 개정 사유

- 공정거래법의 목표가 경제력집중 억제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같은 분배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어, 법이 지향하는 목표와 우선순위가 정연하지 않고 절제되어 있지 않음.
-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정의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이는

결국 공정위가 하는 일이 ‘균형’잡는 일이라고 포괄적으로 인준하는 셈임.

- 서로 상충관계에 있는 정책의 조정과 조화를 위한 ‘균형’은 해당부서를 넘어서서 제3의 기관 및 국민적 의결기관에 맡기는 것이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정신에 충실할 것임.

(3) 개정안

- 제1조(목적) : 이 법은 시장지배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Ⅱ. 시장구조의 개선

1. 가격남용 및 출고조절행위 금지의 삭제

(1) 공정거래법 현황 및 근거

-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 :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입법 취지 :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수량,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지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일반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받을 뿐만 아니라 독점적인 이익확보를 위해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실시

(2) 개정 사유

- 가격, 수량 및 공급조건의 결정은 사업자의 재량이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중요한 경쟁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며 가격의 현저한 상승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불명확하여

외국에서도 공급조건의 결정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지 않음.

- 실제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시정실적을 보면 1981년 이후 지금까지 가격남용행위는 1992년에 3건, 1999년에 1건으로 총 4건이며 출고조절행위는 1998년에 3건에 지나지 않아 사실상 집행실적이 거의 없으며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조항으로 남아 있음.
- 가격남용 및 출고조절행위 금지조항을 삭제하여도 구조적 수단과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규제로 경쟁환경은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음.
 - 기업분할 청구권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경쟁제한적 남용행위를 일삼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강화됨.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은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금지로 경쟁환경 조성 가능
 - 통신, 전력, 가스 등 자연독점적 네트워크 산업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남용 및 출고조절행위는 개별 사업법에서 규제하도록 위임하여 특화된 전문 규제기관이 공익산업에서의 가격남용을 방지

(3) 개정안

-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제1호 및 제2호 삭제

2. 기업분할 청구권제도 도입

(1) 공정거래법 현황 및 근거

- 현 공정거래법에 규정 없음.

(2) 개정 사유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를 대폭 삭제하여 행위제한보다는 예방적 조치(preventive measure)로서 보다 강력한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수단을 도입
-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같은 대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지양하되 개별시장에서의 독과점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
- 미국은 흔치는 않으나 Standard Oil을 분할하고 MicroSoft에 대한 법원에서의 분할심사를 거치는 등 거대한 독점기업을 분할하여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치유하는 엄격한 법집행 수단을 갖고 있음.

(3) 개정안

- 제8조(회사분할 청구) 신설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심각하고 시장지배적지위가 현저하여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의 정도에 중대한 위해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회사분할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임원겸임을 기업결합 규정에서 제외

(1) 공정거래법 현황 및 근거

○ 기업결합의 한 형태로서 임원겸임을 규정

-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제2호

2. 임원 또는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원 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이하 “임원겸임”이라 한다)

-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1항 제2호

: 기업결합의 신고 대상

2. 임원겸임의 경우

- 제16조(시정조치) 제1항 제3호 : 임원의 사임

○ 입법 취지 : 임원이 겸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두 회사는 한 경영진에 의하여 운영되므로 단일 기업에 의하여 운영되는 효과를 가져옴.

(2) 개정 사유

○ 임원의 겸임이란 기업결합 외에도 기술지도, 제휴, 장기적 거래관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필요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일률적으로 기업결합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함.

- 「기업인수 및 합병 등 기업결합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에서도 기업결합은 다음에 제시된 것처럼 실질적으로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되는 것을 의미함.
 - “기업결합”이란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사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거나 통합함으로써 별도의 독립된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 대규모회사의 경우에만 임원겸임을 신고토록 하여, 중소기업과 차별하는 등 법규의 형평성을 상실

(3) 개정안

-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제2호의 삭제
-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1항 제2호의 삭제
- 제16조(시정조치) 제1항 제3호의 삭제

4. 지주회사규제의 삭제

(1) 공정거래법 현황 및 근거

- **법 현황**
 - 제8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 :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
 -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 보유의 금지
 - 자회사 주식의 50% 이상 보유
 - 자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의 지배목적으로의 소유금지
 -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업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소유 금지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소유 금지
 -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지배목적으로의 소유 금지
 -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주식소유현황· 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 제출
-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자가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지주회사와 다른 국내 계열사간, 자회사 상호간, 자회사와 다른 국내계열사간의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 입법 취지

- 기업집단의 무분별한 확장을 금지
- 적은 지분을 통한 피라미드식 계열사 지배구조의 지양
- 기업집단 소유 및 지배구조의 단순·투명화 유도
- 금융산업에서의 부채를 통한 계열사 확장의 금지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2) 개정 사유

-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는 경쟁관련 사항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사항으로서 상법과 증권관련법규에서 규정되어야 할 사항임. 경쟁정책상 지주회사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기업결합규제에서 이미 해결하고 있음.
- 피라미드식의 계열사 지배구조와 지주회사식의 병렬형 계열사 지배구조 중에서의 선택은 다각화, 전문화, 투자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집단이 스스로 선택하는 내생변수임. 이는 정부나 투자자의 규제의 용이성이나 지배방식에 대한 투명한 이해를 위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님.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글로벌 경쟁에서 다각화와 전문화를 추구하는 방식은 개별 기업이 선택하여야 할 문제임. 건전하고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 수익성을 올리느냐의 여부가 더 중요함. 지배구조 방식은 사전적 규제대상이 아니며 시장에서 결정될 사항임.
- 지주회사의 지분구조 등을 규제하는 것은 지주회사 방식 등을 통한 기업집단의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그러나 외국의 지주회사는 지분율에 대한 규제가 없음. 적정 지분율은 외부주주와의 관계, M&A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될 문제임. 또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규율은 최근 많이 개선되었고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기업집단 확장에 대한 적절한 견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규제는 불필요하며 중복적임.

- 회계제도의 강화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3(결합재무제표 작성 기업집단의 범위 등)과 동법 시행령 제1조의4(결합재무제표 작성 기업집단의 범위 등)에 의하여 자산규모 2조 이상의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 자본시장 공시제도의 강화¹⁾ : 상장기업과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기업의 확장과 타계열사 출자에 대한 제반사항을 공시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본시장에서 당해 기업의 가치를 평가
- 적은 지분을 통한 계열사 지배도 드러난 현상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를 통해 의사결정구조가 왜곡되고 소수주주의 편익이 침해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임. 최근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의 현저한 개선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소수주주 편익의 침해를 크게 줄이고 있음.²⁾ 특히 외환위기 이후 투자자나 채권자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하는 의사결정의 경우 기업의 주가가 급락하고 신용도가 떨어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지주회사의 자회사 외의 국내회사에 대한 지배목적으로의 소유금지, 지주회사 자회사의 다른 국내회사에 대한 지배목적으로의 소유금지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의 금융·보험업 외의

1) 회계·공시제도 관련 사항은 <별첨 2>를 참조.

2) 기업지배구조 개선 현황은 <별첨 3>을 참조.

국내회사 소유금지 및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업 국내회사 소유금지 등의 규정은 주주간 상이한 이해관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다음의 상법 제374조가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에 대한 예방적 장치를 갖고 있음.

-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 회사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의 양도,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및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등의 금융관련 규제는 이미 금융시장에서 정도는 다르지만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음.

- 금융시장의 기업경영 심사기능 :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여신운용 원칙)에 따라 여신 심사를 하고 사후적 관리를 하는 업무에 대한 기준인 ‘여신운용 원칙’을 만들어서 채무자의 사업확장에 대한 적절한 심사를 수행함. 또한 동 규정 제79조(주채무계열)와 제82조(주채권은행의 기능)를 통하여 주채무계열의 소속기업체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기업정보를 관리하고 경영지도를 시행하고 있음.

- 금융시장의 편중여신 억제규제³⁾ : 금융기관이 개별 채무자 여신규모에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무분별한 기업확장 불가
- 필요시 금융시장에서 지주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적 규제를 통하여 부채비율 등 금융시장 관련규제를 보완할 수 있음.
 -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보유금지 : 금융기관의 여신운용과 부채비율 규제로 과도한 부채는 규제되고 있음. 필요시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금융시장 규율메커니즘에서 규정할 수 있을 것임.
 - 금융지주회사의 금융·보험업 이외의 국내회사 주식소유 금지 : 현 금융지주회사법 제5조(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를 인가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금융지주회사의 산업자본에 대한 주식소유 금지는 직접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규정하도록 보완하면 될 것임.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업 영위 국내회사 주식소유 금지 :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는 은행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된 의결권 10% 이상 보유금지에 따라 자연스럽게 차단되고 있음. 또한 각종 금융관련법에서 규정된 중립적 의결권 행사규정 및 편중여신 억제규제에 따라 은행 이외의 금융계열사를 갖고 있는 산업자본도 이를 통한 기업집단의 확장이나 불합리한 자금의 유통은 불가능함.

3) 금융시장 편중여신 억제규제 현황은 <별첨 1>을 참조.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 제한 : 은행업감독 규정 제81조(계열사의 채무보증 취득 제한)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소속기업체로부터 신규로 받아 여신취급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채무보증을 없애는 것은 필요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지주회사 체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업간 지배·종속관계의 문제⁴⁾는 미국식의 다중대표소송제의 도입, 자회사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지주회사 주주의 의결권 인정 등과 같은 회사법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 보완할 수 있을 것임.

(3) 개정안

- 공정거래법 제8조(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의 삭제
- 공정거래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의 삭제
- 공정거래법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 제한) 삭제

4) 이재형(2000), 『지주회사의 본질과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Ⅲ. 경제력집중 억제 관련 조항의 삭제

1. 상호출자 금지조항의 삭제

(1) 공정거래법 현황 및 근거

- 현 공정거래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의 계열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입법 취지
 - 실제 자금의 도입 없이 가공적인 자본의 증가로 무분별한 기업의 확장 및 부채의 증가
 - 가공출자로 지배력을 교환·소유함으로써 실제 자본을 출자한 출자자들을 소외
- 상법의 사법적 성격상 관할 행정청이 없는 등 규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음.

(2) 개정 사유

- 개별기업의 지분소유 문제는 경쟁정책과는 무관
- 자본시장의 각종 공시규정⁵⁾에서 ‘자본금의 10%(자산규모 2

5) 이러한 공시규정으로는 「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주요 경영사항) 제2항 제5

조원 이상의 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 기준)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다만, 그 누계금액이 자본금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인 경우와 자본금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2.5%) 이상 변동(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 기준)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상호출자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 투자자에게 전달되므로 기업집단이 경제적 가치를 왜곡하고 투자자를 소외시킬 가능성은 없음.

○ 금융시장에서도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다음과 같은 각종 여신관리 규제에 따라 상호출자에 따른 가공자본을 통한 부채증가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음.

-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여신운용 원칙) 제1항에서 다음을 의무화하고 있음.

- 제1호 :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 제4호 :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주채무계열) 및 제82조(주채권은행의 기능)에서 신용공여잔액이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잔액 대비 0.1% 이상인 계열기업군과 그 소속기업체를 주채무계열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주된 채권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지정한 후 주채무계열 또는 그 소속기업체에 관한 여신 상황을 포함한 기업정보를 주채권은행이 종합적으로 관리

호,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제69조(주요 경영사항의 범위 및 신고 방법) 제1항 제5호 사목,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제6조(공시 신고사항) 제1항 제5호 사목 등이 있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밖에 금융시장에서의 각종 편중여신 억제규제에 따른 여신상한 규정으로 말미암아 동일 기업집단에 대한 여신규모는 상호출자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되어 있음.

○ 다음과 같은 상법의 규제는 상호출자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지배구조상의 규제사항임.

-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 제369조(의결권) 제3항 :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상법의 주식회사 관련 법집행은 사적인 소송을 통하여 법원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정부 행정조직에 의한 법집행이 개인간의 소송에 따라 법원이 집행하는 방법이 보다 법집행력이 우월하다는 보장은 없으며 모든 상법상의 규정이 정부 행정조직에 의하여 집행될 수도 없는 것임.⁶⁾

(3) 개정안

- 공정거래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의 삭제

2. 출자총액제한규제의 삭제

(1) 공정거래법 현황 및 근거

- 현 공정거래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 : 자산총액이 5조원이 넘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의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6) 대기업집단 중 실제 상호출자의 문제가 제기된 경우는 많지 않음. 1981년~1993년 사이에는 25건의 위반이 나타났지만 1994년부터 2001년까지는 7건에 지나지 않음.

○ 입법 취지

- 직접적 상호출자만을 규제하는 경우 순환출자 등 간접적 상호출자방식에 의한 가공자본 형성 등 경제력집중 심화문제에 대처하기 어려움.
- 문어발식 사업다각화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며 주주 및 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 소수지분에 의한 대주주의 경영지배력을 확장
- 출자에 의한 독과점 형성과 경쟁제한 가능성 증대
- 1998년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의 전면허용에 따른 경영권 방어와 외국기업에 비해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문제를 해소시킨다는 차원에서 출자총액제한이 폐지됨. 그러나 재벌 계열사간 출자가 대폭 증가하고 내부지분율이 크게 높아져 동일인이 가공자본을 이용하여 적은 지분으로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선단식 지배구조가 심화되고 외부유입되는 실질적 자본증가 없이 부채비율을 감축시키며, 계열사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등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게 되어 2001년에 다시 도입함.

(2) 개정 사유

- 출자총액제한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배치됨.
 - 일본도 출자규제를 폐지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출자총액제한은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 대기업이 다양한 투자대상을 찾아 21세기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시점에 역동적인 기업투자를 제한함에 따라 글로벌 시대에 외국기업과의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게

되며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의 효과를 가져옴.

○ 출자총액제한 등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공정거래당국의 집행력을 분산시키며 경쟁정책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일례로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구조적인 교정수단(structural remedy)이라 할 수 있는 기업결합 제한과 경제력집중 억제 위반행위의 시정실적을 비교하였을 때에 경고 등의 가벼운 수단을 제외한 고발·시정명령·시정권고 등 시정조치의 수는 1981~2001년 기간 중 기업결합 제한위반이 13건에 지나지 않는 반면 경제력집중 억제위반은 97건에 이르고 있음. 동 기간 중 우리나라의 기업결합 건수가 6,150건이고 이 중 수평적 기업결합이 1,398건이라는 것을 참고한다면 기업결합 제한과 같은 경쟁정책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음.

○ 순환출자에 따른 계열사 지배는 다음에서 현실적 타당성이 취약함.

- 내부지분 구성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5대 재벌은 사실상 순환출자에 크게 의지하지 않고 있음이 밝혀짐.⁷⁾
- 기업현실상 A → B → C … → A로 연결되는 식의 순환출자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음. 예를 들어 기업집단의 주력기업인 A회사는 B에 출자할 여력이 있지만 C, D 기업으로 내려갈수록 규모가 작아 C, D와 같은 하위기업이 A기업에 출자할 여력도 없으며 출자를 하더라도 규모면에서는

7) 김진방(1999), 「재벌의 소유구조 : 통계, 개념, 분석」, 『경제학연구』 제48집 제2호, pp.57-93.

의미가 없음.

- 대주주가 계열사를 지배하려면 주력기업에 집중적으로 출자하고 그 주력기업이 다른 계열사에 출자하는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면 되므로 순환출자의 필요성이 거의 없음.

○ 문어발식 다각화에 대한 비판은 기업집단의 경쟁력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님. 오히려 글로벌 경쟁에서 다각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문제는 다각화를 통하여 건전하고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 수익성을 올리느냐의 여부임. 그러나 이는 사전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며 시장에서 결정될 사항임. 따라서 사전적으로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에서 기업집단의 출자 및 투자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규율은 다음과 같이 최근 많이 개선되었고 출자와 같은 기업집단 확장에 대한 적절한 견제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회계제도의 강화 : 결합채무제표 작성 의무화
- 금융시장의 기업경영 심사기능 :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심사를 하고 사후적인 관리를 하는 업무에 대한 기준인 ‘여신운용 원칙’을 만들어서 채무자의 출자에 대한 적절한 심사를 수행
- 금융시장의 편중여신 억제규제⁸⁾ : 금융기관이 개별 채무자 여신규모에 상한을 두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사실상 무분별한 출자는 불가

8) <별첨 1> 참조.

- 자본시장 공시제도의 강화⁹⁾ : 상장기업과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타계열사 출자에 대한 제반사항을 공시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본시장에서 당해 기업의 가치를 평가
- 소수지분을 통한 계열사 지배는 드러난 현상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이를 통해 의사결정구조가 왜곡되고 다른 투자자의 편익이 침해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임. 최근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의 현저한 개선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소수주주 편익의 침해를 크게 줄이고 있음.¹⁰⁾ 특히 외환위기 이후 투자자나 채권자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하는 의사결정의 경우 기업의 주가가 급락하고 신용도가 떨어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출자총액제한은 그 규제대상, 출자한도액의 크기가 수시로 변화였음. 또한 적용제외와 예외조항이 자의적으로 나타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늘어나게 되어 규제의 자의성이 크고 그 기준이 분명치 못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적용제외와 예외조항의 확대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음. 첫째는 본래 규제하기에 적절치 않은 내용을 억지로 규제하다보니 불편을 느끼는 기업들이 불만을 제기하게 되어 결국 적용제외와 예외규정이 늘어나게 된 것임. 둘째는 차츰 예외가 늘어나게 되므로 법집행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자연히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예외조항이 점차 확대된 것임.

9) <별첨 2> 참조.

10) <별첨 3> 참조.

○ 출자의 확대는 경쟁을 촉진하는 작용을 함.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에 진출하여 기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역시 대기업일 수밖에 없는데 출자총액 제한으로 대기업의 시장진출이 막혀서 오히려 경쟁을 억제하고 있음. 동종의 업종에 대한 출자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심하게 제약하는 경우 기업결합 제한에 의하여 규제를 받을 것임. 이와 함께 본 개정안에서는 심각한 독과점문제가 나타날 경우 기업분할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이에 따라 동종의 업종에 대한 출자를 통한 수평적 지배력의 확대는 근본적인 제약을 받게 됨.

○ 출자총액제한의 실효성 미약 : 총량적·확일적 출자규제는 계열사 지분을 하락 및 그에 따른 대주주의 지배권 약화, 그리고 계열기업의 확장을 억제시키는 데 효과가 거의 없었음. 반면에 1998년 이후의 경험에서도 보듯이 출자규제가 없어도 기업들은 경영여건의 변화에 따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의 범위를 신축적으로 조정하기도 함.

- 출자총액제한이 시행되었던 1989~1997년 사이의 30대 재벌의 계열사 수와 영위업종 수는 오히려 증가

▪ 계열사 수 : 509개('89) → 623개('95) → 819개('97)

▪ 영위업종 수 : 11.3개('89) → 18.5개('95) → 19.8개('97)

- 반면 출자총액제한이 폐지되었던 1998~2000년 기간 중 30대 기업집단의 평균계열사 수는 구조조정 여파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영위업종 수는 대폭 감소

▪ 계열사 수 : 804개('98) → 686개('99) → 544개('00)

▪ 영위업종 수 : 20.0개('98) → 18.5개('99) → 15.3개('00)

○ 출자총액 재도입 논리의 문제점 : 출자규제 폐지 후 기업집단 간의 출자가 증가하고 내부지분율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동일인이 적은 지분으로 다수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심화되어 출자규제를 재도입하게 되었다는 논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

- 내부지분율 증가는 정부의 부채비율 축소 압력하에 실시한 대규모 유상증자와 계열사들의 유상증자 참여, 부실기업 인수 등에 기인하며 재벌의 체계적인 계열확장 행위가 아니라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임. 1998년과 1999년 사이에 계열사에 대한 증자참여로 전체 출자 중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비계열사에 대한 출자보다 월등히 많았음(1998년 86%, 1999년 87%).

- 출자규제가 폐지된 이후 출자총액비율과 내부지분율이 증가했다고 하나 30대 그룹의 계열사 수와 영위업종 수는 앞의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줄어들고 있어 출자규제 폐지 이후 오히려 ‘선택과 집중’으로의 구조조정이 증가하여 왔음. 내부지분율은 계열사를 확장하지 않으면 높아지므로 내부지분율이 높은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임.

(3) 개정안

○ 공정거래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의 삭제

3. 계열사 채무보증제한 규제의 삭제

(1) 공정거래법 현황 및 근거

- 현 공정거래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입법 취지
 - 자금시장에 있어 독립기업, 특히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여신접근 기회를 제약함으로써 대기업집단에 대한 여신편중 문제 확대
 - 채무보증으로 계열관계가 공고화되고 선단식 경영구조가 고착화됨.
 - 일부 계열회사의 부실경영이 그룹전체로 파급됨으로써 연쇄도산을 초래하고 금융기관에게 부실채권을 발생시킴으로써 국민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
 - 금융관련법에서 규제하여야 하겠지만 개별 금융관련법령을 전부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적 제약과 집행가능성의 문제가 있고, 선단식 경영구조로부터 독립경영체제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는 것이 실효성 있음.

(2) 개정 사유

- 본질적으로 채무보증제한제도는 경쟁정책과는 무관하며 금융시장 규율메커니즘을 통하여 규제할 사항
- 채무보증은 재벌의 자율적인 재무구조 개선노력으로 상당부분 개선되었음. 즉, 30대 재벌의 총 채무보증금 추이가 63.6조원('98) → 22.4조원('99) → 7.3조원('00) → 4.9조원('01)으로 줄고 있음. 이 같은 재무구조 개선은 공정거래법상의 채무보증제한규정이 그 원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30대 재벌의 제한대상이 아닌 채무보증금 추이도 36.6조원('98) → 12.6조원('99) → 5.8조원('00) → 4.5조원('01)으로 줄어든 것은 자율적인 재무구조 개선노력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임.
- 외환위기 이후에 편중여신을 규제하는 금융시장의 규율메커니즘이 주채무계열제도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음. 또한 「은행업감독규정」 제81조(계열사의 채무보증 취득제한)에서는 주채무계열의 소속기업체간 채무보증을 통한 여신을 금지하고 있고 「외국환관리규정」 제8-2조(신고 등)에서도 상위 30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보증잔액의 95%와 수출실적의 20%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외국에서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어서 사실상 채무보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법인세법 제34조의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의하여 공정거래법이 제한하고 있는 계열사간 채무보증으로 인

한 대손충당금은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계열사간 채무보증에 대한 억제효과가 있음.

- 자본시장의 공시규정에서도 큰 규모의 채무보증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주요 경영사항) 제2항 제21호의 가목,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주요 경영사항의 범위 및 신고방법) 제1항 제4호의 가목,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제6조(공시신고 사항) 제1항 제4호 가목 등에서는 ‘자본금의 10%(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규모법인의 경우는 5%) 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다만, 그 누계잔액이 자본금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는 5%) 이상인 경우 자본금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2.5%) 이상 변동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투자자들도 채무보증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음.

(3) 개정안

- 공정거래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의 삭제

4.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의 삭제

(1) 공정거래법 현황 및 근거

- 현 공정거래법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

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입법 취지

- 금융·보험사의 타회사 주식소유는 지배목적보다는 수탁자산의 수익성 제고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출자총액제한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따라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보완하여 금융·보험사가 계열회사의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여 지주회사화하거나, 계열회사 확장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었던 1998년에도 금융·보험사가 계열확장이나 계열강화의 수단이 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하에 존속되어 왔음.
- 5대기업집단에 의한 금융시장 지배력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현상이 심화되는 추세임.

(2) 개정 사유

- 의결권 제한은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주주의 과도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려 하거나 은행 등에 대한 것처럼 정부가 소유지배구조를 특별히 규제할 목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지 재벌을 선택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됨.¹¹⁾

11) 이러한 의미에서 공정거래법 이외에도 대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보험업법」 제19조의3,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5조의2, 「증권투자회사법」 제25조 등은 순수한 금융시장의 규

○ 본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규제도 따라서 폐지되어야 함.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와는 무관하게 재벌의 계열강화 및 확장의 수단을 차단하기 위해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미 규정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산업자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주식소유 제한규제의 강도가 더욱 강력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없음.

- 은행법 제35조의3(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은 자기자본의 1%의 범위를 초과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은행업감독규정 제16조의4(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은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0.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금융기관에 대주주로 출자한 기업집단이 계열구조를 공고히 하는 것을 막고 있음. 한편 은행법 제37조(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등)에서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는 금융기관¹²⁾ 및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

율원리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폐지되어야 할 것임.

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정의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보험사업자, 상호저축은행,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선물업자,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를 총칭

에 속해 있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는 1987년 제도시행 이후 1988년 럭키증권, 동서증권의 각 계열경제연구소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한 2건의 규제실적밖에 없으며 그 이후로는 전무하다가 2000년에 8월에 5개 기업집단 소속 8개 금융·보험회사에 대하여 시정조치한 사례가 있을 뿐 그 집행 실적이 거의 없음.

(3) 개정안

- 공정거래법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의 삭제

5.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의 삭제

(1) 공정거래법 현황 및 근거

- 현 공정거래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중략>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 기타 관련 조항

- 공정거래법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 등)
- 제14조의3(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
- 제14조의4(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 입법 취지 : 상호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의 제한, 부당내부거래 규제 등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불공정거래행위 중 그 대상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일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항

(2) 개정 사유

- 크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같은 반경쟁적 조항을 근본적으로 삭제
- 앞에서 제시된 것처럼 상호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 채무보

증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이 폐지되어야 하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등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실효성 없음.

- 후술되는 것처럼 대기업집단 계열사간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정도 폐지할 것이므로 크기를 기준으로 규제하는 기업집단 지정제도 자체를 삭제

(3) 개정안

- 공정거래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의 삭제
- 공정거래법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 등)의 삭제
- 공정거래법 제14조의3(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의 삭제
- 공정거래법 제14조의4(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의 삭제

IV. 산업정책 관련 내용의 삭제

1. 중소기업 업종으로의 기업결합 제한 삭제

(1) 공정거래법 현황 및 근거

○ 공정거래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4항 제2호 : 기업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행한 기업결합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 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일 것

나. 당해 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

○ 입법 취지 : 헌법 제123조 제3항에 규정된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기업결합의 제한사항으로 규정

(2) 개정 사유

○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에만 특화하며 산업정책적 또는 중소기업정책적인 배려는 오히려 경쟁정책에 역행

- 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술개발과 품질을 향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며 그 결과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저하
 - 경쟁정책의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진흥을 막게 될 가능성이 높음. 자연스러운 수요의 창출과 부가가치의 체인 메커니즘을 통한 대기업 수요의 창출은 중소기업의 육성에도 기여하게 됨.
- 산업의 효율적 규모는 시장이 결정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적정규모에 왜곡을 주는 것은 소비자가격을 인상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킴.
- 국제적인 시장개방에 따라 외국 대기업을 고유업종 투자도 신고제로 완화되었고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고유업종의 제품이 대형 할인매장을 통해 직수입되고 있어서 사실상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실효성 상실¹³⁾
- 정부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중소기업고유업종)에 의하여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규정하고 제4조(고유업종분야에 대한 대기업자 등의 참여제한)에 따라 이미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서 이 같은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는 중복규제의 성격을 가짐.

13) 김은자(1977),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3) 개정안

- 공정거래법 제4조(기업결합의 제한) 제4항 제2호의 삭제

2. 부당공동행위 제한의 산업정책적 예외의 삭제

(1) 공정거래법 현황 및 근거

-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 : 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산업합리화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6.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 입법 취지

- 산업합리화 : 기술향상·품질개선·원가절감 및 능률증진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공동행위는 효율성 향상을 가져오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
- 불황의 극복 :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사양산업이어서 지속적인 손실을 보는 경우는 공동행위를 허용하여 수익성

유지

- 산업구조의 조정 : 공급능력의 과잉, 생산성 저하의 경우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공동행위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후생 증진
-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 중소기업의 품질·기술향상 등 생산성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효과가 명백하며 이외의 방법으로는 대기업과 효율적인 경쟁이 어려울 경우 중소기업 보호측면에서 허용

(2) 개정 사유

-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정책은 특정산업을 보호·육성하는 정책으로 시장의 규모를 제한하고 국내생산자를 지원하므로 경쟁보다는 경쟁자를 보호하는 정책임.
- 부당공동행위는 그 성과보다는 행위의 시도자체를 불법시하는 경쟁제한 행위임. 따라서 산업정책적 또는 중소기업정책적인 성과를 전제로 한 법리는 그 시도만을 불법시 하는 일반적인 부당공동행위 제한의 법리와 상충됨.
-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적용제의 요건의 해석에 정부의 재량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고 이해단체의 영향력이 발휘될 여지가 커서 경쟁정책이 손상 받을 가능성이 큼.
 - 산업합리화 카르텔 : 기술향상·품질개선·원가절감 및 능력증진 등의 산업합리화 기준은 그 의미가 너무 막연하고 넓어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큼.

- 불황극복 및 산업구조 조정 카르텔 : 수요수준보다 과잉상태의 생산설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재량적인 산업정책적 필요에 따라 제시됨. 이는 한계기업을 보호하여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할 산업구조의 조정을 지연시키는 장치가 될 수 있으며, 일반소비자의 편익을 손상시킴. 또한 효율적 사업경영을 게을리 하더라도 일단 불리해지면 불황 카르텔을 조직하여 곤경을 모면하여 치열한 효율화의 노력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유인이 삭감되게 됨.
- 중소기업 카르텔 : 경제적 지대를 추구하는 이익단체에 의하여 로비활동이 유발될 여지가 있음. 경쟁정책에 역행하며 소비자의 편익을 손상하게 됨.

○ 일본의 경우에도 1960년대 한때 연 1,000건 이상 용인되었던 적용제외법령별 카르텔 건수가 1996년 이후에는 40건 이하로 줄어들었음. 또한 적용제외제도의 대폭적인 재검토와 정리가 급속도로 진행중이어서 1997년 7월에는 어획조정 카르텔 등 29개 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함께 6개 제도의 범위를 한정하는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외제도의 정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나머지 48개 제도에 관해서도 폐지·축소의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음.

(3) 개정안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의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삭제

V.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개선

1.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기준을 경쟁 및 소비자 중심으로 변경

(1) 공정거래법 현황 및 근거

○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입법 취지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는 사업자간의 경쟁여건의 조성을 위한 규제임.

(2) 개정 사유

○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는 사업자간의 거래관계에서 발견되는 배타성이나 협상력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적 인식에 집중하여서 경쟁보다는 경쟁자를 보호하는 문제점이 제기됨.

- <사례> : 대형 유통업체 한국까르푸(주)는 지위남용행위 및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음.¹⁴⁾ 그러나 유통업체와 납품업자간

14)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1-081호, 사건번호 2001유거0250.

의 거래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적인 행태보다는 유통업체간의 경쟁효과와 이에 따른 최종소비자에게 미치는 가격인하 효과에 주목하여야 할 것임.

- 사업자간 협상력의 차이나 배타성의 문제에 기인한 거래행태는 경쟁행위와 경쟁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 근거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개정안

- 경쟁법 제22조(공정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의 개정 : 사업자는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이하 생략)

2. 불공정거래행위 적용에서 합리의 원칙기준 적용

(1) 공정거래법 현황 및 근거

-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당연위법의 원칙^{per se illegal}과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이 공존하고 있음.
 - 당연위법의 원칙 : 법조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로 표현됨. 원칙적으로 공정경쟁 저해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위법성을 인정하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 합리의 원칙 : 법조문에 “부당하게”로 표현됨. 당해 행위유형 자체로는 위법성이 없으며 구체적으로 동 행위가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할 때만 위법으로 보는 경우
- 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대부분 합리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유형은 당연위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
 - 공동의 거래거절 :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 부당염매 :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공정거래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1항 :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입법 취지

- 공동의 거래거절 : 미국의 판례에서도 당연위법으로 처리되며 사업자간의 공동행위를 통한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함.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부당내부거래로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다른 주주의 이해를 해치고 대기업의 효율성을 낮추어서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옴.
- 부당염매 : 부당염매가 성공하는 경우 심각한 독점력의 폐해가 예상되므로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함.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유통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결과로 간주되며 미국의 독점규제법에서도 당연위법으로 규정됨.

(2) 개정 사유

-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거래비용 이론에 기초한 효율성 제고의 가능성을 중시하여 ‘합리의 원칙’의 적용을 확대하는 추세임.
- 공동의 거래거절의 경우 : 수직적 공동 거래거절의 경우 효율성 측면에서 경쟁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최근 미국에서도 수직적 공동거래거절은 당연위법 원칙의 적용범위에서 탈피하고 있는 추세임.¹⁵⁾

15) 이러한 추세의 일환으로 Northwest Wholesale Stationers, Inc. v. Pacific Stationary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의 경우 : 이는 하나의 경제적 단일집단의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로 간주하여야 함. 따라서 이는 경쟁제한적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경쟁행위일 수 있음.

○ 부당염매의 경우

- 부당염매는 경제학에서도 그 경쟁제한적 효과가 매우 의문 시되고 있음.¹⁶⁾
- 미국에서도 부당염매는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음. 즉, 시장점유율이 10% 이하인 건전한 경쟁시장에 대해서는 가격과 비용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도 없이 기소가 취하되어야 한다고 판시.¹⁷⁾
- 부당염매는 진입장벽이 상당히 크지 않은 경우라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시
- 부당염매는 경쟁자 배척 이후의 독점화 기간이 길어야만 부당염매 사업자의 수익성이 보장됨. 이런 측면에서 부당염매의 경쟁제한 논리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음.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우

- 저작물을 비롯한 예외 인정
 - 공정거래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2항 :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과 다음 각호의

& Pinting Co., 472 U.S. 284(1985)의 판결에서는 당연위법의 범위를 공동 거래 거절의 시행자들 자신의 경쟁자를 불리하게 하려는 행위로 국한하였음.

16) John S. McGee(1958), "Predatory Price Cutting : The Standard Oil(N.J.) Case," *Journal of Law & Economics*, Vol.1, pp.137-169.

17) A. A. Polutry Farms v. Rose Acre Farms, 881 F.2d 1396(7th Cir.) 1989.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2. 당해 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3.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 독일의 경쟁제한금지법 제16조에도 출판물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을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일본의 독점금지법 제24조의2 제4항에서도 저작물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음.

- 저작물의 유통과정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이유는 이를 통해 유통업자가 적정수준의 유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즉, 유통업자의 할인판매를 허용한다면 유통업자는 매출실적인 높은 베스트셀러 중심의 저작물만 선택적으로 진열하여 판매하려 할 것이므로 유통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제품진열과 이에 따른 적절한 관리서비스를 회피하게 될 것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이를 막고 저작물의 유통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서의 의의를 갖고 있음. 그러나 이 같은 논리는 저작물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님. 즉, 어떤 형태로든지 유통업자의 서비스가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는 경우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업자를 그렇지 않은 유통업자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로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활용되는 것

임. 이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경쟁제한행위가 아닌 경쟁행위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법집행 사례에서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보다는 경쟁적 시장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기업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¹⁸⁾ 이는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경쟁제한행위가 아닌 경쟁행위로 인식하여야 함을 말해 주고 있음.

(3) 개정안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다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를 ‘부당하게’로 개정
 - 제1호(거래거절)의 가목(공동의 거래거절)
 - 제2호(차별적 취급)의 다목(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제3호(경쟁사업자 배제)의 가목(부당염매)
- 공정거래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한 경쟁법 제22조(공정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로 편입
 - 경쟁법 제22조(공정법 제23조) 제1항 제9호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

18) 신광식(1992)은 1988년도 매출액 자료를 조사한 결과 자료가 있는 45개 기업 중 단지 13개 기업만이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이상임을 보이고 있음. 신광식(1992), 『시장거래의 규제와 경쟁정책』, 한국개발연구원.

- 9.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 공정거래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2항 내지 제4항, 제30조(재판매가격유지의 수정), 제31조(시정조치), 제31조의2(과징금)는 삭제

3. 부당내부거래 제한의 삭제

(1) 공정거래법 현황 및 근거

-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1항 <별표 1>의 제10호(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자금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나. 부당한 자산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다. 부당한 인력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공정거래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이하 생략)

○ 입법 취지

- 경쟁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경쟁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벌이 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
- 국민경제적 비중이 큰 대규모기업집단이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부당내부거래로 부실·몰락할 경우 그 피해의 파급효과는 막대함. 특히 IMF체제 출범 이후 재벌중심의 대기업 구조가 경제위기를 초래한 핵심요인의 하나라고 보는 문제의식하에서 부당내부거래의 근절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대표적인 과제로 채택됨.
- tunneling효과 : 소액주주의 경제적 희생을 전제로 재벌총수나 다른 계열사의 이득을 부당하게 증가시킴.

(2) 개정 사유

- 해외 선진국의 경쟁법에서는 계열사간의 자금·자산·인력의 지원행위를 규제하지 않으며 우리나라만이 계열기업간의 지원행위를 금지
- 또한 경쟁제한적인 계열사간의 거래는 공정거래법의 타 규정에 의하여 이미 규제되고 있어서 자금·자산·인력 지원행위의 삭제가 경쟁환경을 해치는 것은 아님.
 - 경쟁제한적인 계열사간의 거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차별적 취급)의 다목(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규제대상임.
-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본질적으로 사업자간의 모든 경쟁여건을 동일하게 만들 수는 없으며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할 당

위성도 없음.

○ 근본적으로 아무리 특정 기업이 국민경제적으로 갖는 규모나 중요성이 크다고 할지라도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그 내부적 효율성에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함.

- 자연독점적 네트워크 산업의 포획소비자(captured customer)를 대상으로 한 공익산업도 아니며 공기업도 아닌 사기업의 내부적인 효율성에 대하여 정부는 개입할 권한이 없음.

- 「은행업감독규정」 제82조(주채권은행의 기능)에 의하여 주채권은행이 해당 기업집단을 주채무계열로 상대하여 그 소속기업체에 관한 여신상황을 포함한 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경영을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비효율적인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적절하게 견제하고 경영을 감시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규율메커니즘이 규정하고 있음.

○ 경쟁과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할 것임. 후발주자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특정 사업분야에 대한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그룹차원의 지원은 하루빨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경쟁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함.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를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 진입하고 효율성이 낮은 기업이 퇴출을 지연하는 수단으로만 이해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쟁과정을 단기적으로 ‘판정’하고 있음. 결국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는 그것이 경쟁제한적일 것이라는 예단하에 이루어짐에 따라 내부거래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미리 차단할 가능성이 높음.

○ 소액주주의 경제적 편익을 재벌총수나 다른 계열사로 부당하게 이전하는 행위는 규제하여야 할 대상이나 이는 주주간의 문제로서 상품시장의 경쟁규율을 관장하는 공정거래법보다는 주주간의 관계를 다루는 자본시장 규율에서 규정되어야 할 사항임. 한편 자본시장 공시규정은 다음에 나타난 것처럼 일정액 이상의 내부거래와 지원성 자금의 수수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내부거래에 따른 주주간 이해의 문제를 투명하게 밝혀서 시장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주요 경영사항) 제2항의 제26호 및 제27호,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주요 경영사항의 범위 및 신고방법) 제1항 제3호 바목 및 제4호 나목,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제6조(공시신고 사항) 제1항 제3호 바목 및 제4호 나목에서는 ‘자본금의 10%(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의 증여(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 기준으로)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및 증여를 받기로 한 때. 다만, 직전에 공시한 그 누계금액이 자본금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인 경우 자본금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2.5%) 이상 변동(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 기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와 ‘자본금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의 타인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금 및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대여(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 기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다만, 그 누계잔액이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2.5%) 이상 변동(당해 사업연도의 누계잔액을 기준으로)된 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주요 내부거래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71조(최대주주등과의 거래의 신고),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제6조(공시 신고사항) 제3항에서는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및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최대주주 등을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당해 거래일까지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금전을 가지급하거나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대여한 경우
2. 부동산, 동산 또는 유가증권 기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3. 금전채무를 지급보증한 경우
4. 출자한 경우
5.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한 경우
6. 부동산을 매수, 매도 또는 임대차한 경우
7. 영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

○ 또한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내부거래로 법인소득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에는 세무당국이 별도로 법인소득을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내부거래를 통한 지원행위를 제재하고 있음.

(3) 개정안

○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의 삭제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1항의 <별표 1>의 제10호의 삭제
- 공정거래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삭제

VI. 경쟁정책 집행자변의 확대

1.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회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1) 공정거래법 현황 및 근거

- 공정거래법 제3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제1항 :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 공정거래법 제3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 공정거래법 제3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제2항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입법 취지
 - 비상임위원으로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임과 동시에 합의제 행정기관임.

(2) 개정 사유

- 공정거래위원회를 감사원과 같이 대통령에 소속하게 하고 그 독립성을 존중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공정거래정책의 집행에 공정성을 기함.
- 전 공정거래위원의 상임위원화로 위원회 업무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
 - 심판과 소추기능을 분리하여 중립적 의사결정과 전문성을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수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제한함으로써 위원회 운용의 효율성을 높임.

(3) 개정안

- **공정거래법 제3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개정**
 - 제1항 : 이 법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 제3항 신설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 공정거래법 제3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에서 “그 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를 삭제
- 공정거래법 제37조(경쟁법 제27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를 다음과 같이 개정
 - 제1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원 상임위원으로 한다.
 - 제2항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 중 2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2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추천한다. 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2. 금지청구권의 도입

(1) 공정거래법 현황 및 근거

- 현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 없음.

(2) 개정 사유

-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이미 발생한 후에는 손해 배상 등의 사후적 구제방법으로 이를 전보하는 것이 효과가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인私人이 직접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미국은 클레이튼법Clayton Act에서, 유럽연합은 판례를 통하여, 독일도 경쟁제한금지법 등에서 금지청구를 허용하고 있음. 또한 최근 일본도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였음.

(3) 개정안

- 경쟁법에 다음의 조항 신설
 - 제49조(금지청구) : 제5조(경쟁제한적 행위의 금지), 제17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8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2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의하여 그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피해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3. 사적 소송의 도입

(1) 공정거래법 현황 및 근거

- 공정거래법 제57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등) 제1항 : 제56조(손해배상책임)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입법 취지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과 법원판결간의 모순 및 저축을 피함
-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줄여 피해구제의 효율을 도모
- 피해자의 남소를 방지
- 공정위 업무권한의 부당한 축소를 방지

(2) 개정 사유

- 공정위의 심결과 법원의 판단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으며 굳이 양자간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법률적으로 막을 필요성은 없음.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 어차피 법원에 의하여 그 적법성을 심사받지 않을 수 없음.
- 피해자의 입증부담은 선확정제도를 폐지하더라도 피해자가 공정위에 피해신고를 하는 한 그대로 그 목적을 거둘 수 있음. 반면, 공정위가 조사중지·무혐의결정·경고조치 등으로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피해구제를 함이 타당한 사안일 경우 피해구제의 효율을 도모하기 어려움.
- 공정거래법은 일반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에 제한을 주지 않는다고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제56조상의 손해배상은 줄어들겠지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인한 남소는 늘어날 수 있음. 오히려 부당하게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사소私訴의 도입은 공정위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공정위는 국가경쟁정책판단이 필요한 주요 사건에 더 진력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음.
- 미국, 유럽연합,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선결조치 전치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음. 일본의 경우도 무과실책임을 지우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공취위의 “심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은 “시정조치” 선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음.

(3) 개정안

- 공정거래법 제57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등)의 삭제

4. 형사처벌 대상범위의 축소와 전속고발권의 폐지

(1) 공정거래법 현황 및 근거

- 공정거래법 제66조(벌칙)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
 -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 기업결합의 제한규정에 위반한 기업결합
 -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

- 채무보증제한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규정에 위반한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지주회사로의 전환
 - 상호출자 금지 또는 출자총액제한에 위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 계열회사 채무보증 금지 위반
 -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위반
 - 부당공동행위 금지 위반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 공정거래법 제67조(벌칙)에 따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 위반
 -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위반
 -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회계감사 의무 위반
- **공정거래법 제71조(고발)**
- ① 제66조(벌칙) 및 제67조(벌칙)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③ 검찰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2) 개정 사유

-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위반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실상 그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법 제71조 제2항의 공정위의 검찰에 대한 고발의무 요건은 매우 추상적·일반적 조항이어서 공정위의 재량에 실질적 제약을 가할 수 없음.
 -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한 사례는 한 건도 없음.
 -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중 고발조치된 사건은 약 1%에 불과함. 더구나 이 고발사건 중 과반수는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형식으로 취해진 것임.
 - 다만, 고의적 부당공동행위는 외국에서도 경쟁정책의 집행을 위하여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하고 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남겨 둬.
- 이처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대부분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정부도 기업활동의 위축에 대한 우려로 이에 대한 집행을 주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형사벌 대상범위를 축소하되 검찰에 의한 수사와 공소는 자

유롭게 허용함.

(3) 개정안

- 경쟁법 제65조(공정법 제66조) (벌칙) :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부당공동행위의 경우로 한정
- 경쟁법 제66조(공정법 제67조) (벌칙) :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 공정거래법 제71조(고발)의 삭제

5. 범위반 사실 공표명령제도 폐지

(1) 공정거래법 현황 및 근거

- 공정거래법 제5조(시정조치), 제16조(시정조치), 제21조(시정조치), 제24조(시정조치), 제27조(시정조치), 제31조(시정조치) 등에 나타난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피심인으로 하여금 주요 일간지에 범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음.
- 유사 규정 : 표시광고법 제7조(시정조치)
- 입법취지
 - 소비자와 다른 기업 등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경쟁저촉 행위에 대한 정보 제공
 - 피심인의 명예나 기업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통한

징벌적 효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

(2) 개정 사유¹⁹⁾

- 공정위의 범위반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자료가 공표되고 있으므로 동일한 효과가 달성되고 있어서 중복적인 조치임.
- 미국, 일본, 독일 등에도 없는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로써 획일적인 언론 보도자료 공표로 인하여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대외통상마찰 등 피해가 우려됨.²⁰⁾
- 2002년 1월 헌법재판소는 대한병원협회가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공정위의 범위반 사실 공표 명령」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행위자의 행동의 자유 및 명예를 지나치게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공정위는 「범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로 변경하여 이를 시행중에 있음.

(3) 개정안

- 공정거래법 제5조(시정조치), 제21조(시정조치), 제24조(시정조치), 제27조(시정조치), 제31조(시정조치) 등에서 ‘범위반사실의 공표’를 삭제
- 공정거래법 제16조(시정조치) 제1항 제6호의 삭제

19) 이 부분은 한국공정거래협회(2002)의 「공정거래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건의 사항」의 내용을 참조하였음.

20) 독일은 불공정경쟁방지법(UWG) 제23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원고에게 판결문을 피고의 비용으로 공표하게 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별첨 1〉

금융시장 편중여신 억제규제 현황

1. 은행법 제35조(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동일차주에 대하여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 금지
2.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여신운영 원칙) 제1항 제5호
: 산업별, 고객그룹별 등으로 여신운용의 다양화를 통한 여신 편중 현상의 방지
3.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여신심사 및 사후 관리기준) 제1항 제3호
: 적정한 규모의 여신이 취급될 수 있는 차주별 여신한도제도의 운영
4. 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재산운용의 비율)
: 재산운용 비율의 상한을 다음과 같이 정함.
 - 주식소유(40%), 부동산(15%), 동일회사의 채권 및 주식의 소유 또는 이를 담보로 하는 대부(5%), 동일인에 대한 대부(3%),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대부 합계액(2%), 자기계열집단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의 소유와 이를 담보로 하는 대부(3%), 동일 기업집단에 대한 대부의 합계액(5%), 동일 기업집단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의 소유 또는 이를 담보로 하는 대부(10%), 동일인 또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대한 거액대부(보험사업자 총자산의 1%를 초과하는 대부의 합계액(20%))

5.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15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 신용공여가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을 다음과 같이 정함.
 - 동일차주(25%), 주주·임원·자회사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25%), 거액신용공여(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의 총합계(500%),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20%)

6.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
 - :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대출 금지

7.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
 - :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5% 이내에서 대출.
초과시 금감위의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 필요

〈별첨 2〉

회계·공시 관련제도 도입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법적 근거
회계	결합재무제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해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외감법 제1조의3('98신설)
공시	상법상의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공시 : 주총 소집의 통지와 공고(제363조) - 간접공시 : 재무제표 등의 비치(제448조), 정관·주주명부·주총의 사록·사채원부의 비치(제396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 공고(제449조),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제446조) 	
	증권거래법 상의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시장 공시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제8조), 사업설명서 제출(제12조), 유가증권 발행실적보고서 제출(제17조) - 유통시장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공시 : 사업보고서 제출(제186조의2), 반기보고서 제출(제186조의3), 연결재무제표 제출(제186조의2) · 수시공시 : 부도발생 및 은행거래 정지·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정리절차 개시의 신청 등(이하 제186조), 최대주주 및 계열사의 변동·특수관계인과의 거래·20% 이상의 신규시설투자 등에 대한 이사회 결의(령 제83조) 	
	허위·부실 공시에 대한 재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최고한도 상향조정(5억원 → 20억원) - 대형 상장·코스닥법인의 공시기준을 일반기준보다 높이는 등 공시제도 개선 - 대형 상장·코스닥법인과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분기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제도 도입 	
외부 감사	외부감사인의 책임 강화	감사인의 업무소홀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배상책임 명시	외감법 제17조('98 개정)
	감사인선임 위원회 설치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등의 감사인 선임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 의무화	외감법 제4조 제2항('98 개정)

자료 :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안 : 기업경쟁환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수립연구, 전국경제인연합회(2002).

〈별첨 3〉

기업지배구조 개선 현황

1. 소수주주권 강화 관련제도 도입 현황

(단위 : %)

구 분	주요 내용 및 행사 요건	법적 근거
주주제안권	- 이사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상법 제363조의2('98 신설),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3 ('97 신설)
임시주총 소집청구권	- 주총 소집 목적·이유를 서면으로 이사회에 제출하고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법 제366조('98 신설),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99 개정)
업무·재산 상태 검사인 선임청구권	-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법 제467조('98 개정),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99 개정)
회계장부 열람권	-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법 제466조('98 개정), 증권거래법 191조의13 ('99 개정)
이사·감사· 청산인의 해임청구권	-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주총이 해임을 부결했을 경우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0.5(0.25)	상법 제385·415·539 ('98 개정),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98 개정)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행위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0.05(0.025)	상법 제402조('98 개정),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99 개정)
대표소송 제기권	-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0.01	상법 제403조('98 개정),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98 개정)
집중투표권	-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1	상법 제382조의2('98 신설) (단, 정관으로 배제가능)
사외이사 추천권	-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 - 1(0.5)	

자료 :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안 : 기업경쟁환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수립연구, 전국경제인연합회(2002).

2. 이사회 관련제도 도입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법적 근거	
사외 이사제	- 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 1/4에 해당되는 사외 이사 선임	상장규정 제48조의5 (98 신설)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금융기관, 대형코스닥 법인의 경우, 다음 사항 적용 · 이사회 1/2 이상 및 3인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 · 감사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포함 사외이사 2/3 이상 으로 구성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의무화 ·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시 대주주의결권 3%로 제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6(01개정)	
「사외이사직무수행규준」 제정 : 사외이사제도개선위원회('00)			
이사· 이사회	이사의 충실의무 신설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한 충실한 직무수행 의무 (duty of loyalty) 명문화	상법 제382조의3 (98 신설)
	업무집행 관계자의 책임규정 신설	업무집행 관계자(사실상의 이사)로 간주되는 자에 대해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 대표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게 하는 제도	상법 제401조의2 (98 신설)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정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일부 권한의 위원회에 대한 위임 가능	상법 제382조의3 (98 신설)
	이사회 승인 의무화	대규모 상장법인 및 코스닥 등록법인의 경우 최대 주주 등과 일정규모 이상 내부거래시	증권거래법 (01 신설)

자료 :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안 : 기업경영환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수립연구, 전국경제인연합회(2002).

제3장

경쟁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시장지배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사업자와 동종의 산업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자의 계열회사는 이를 함께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1의2호 및 1의3호 : 삭제>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개정 99.2.5>
 -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 이상의 회사의 집단
3. “계열회사”라 함은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4.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

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5. “임원”이라 함은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6. “재판대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억 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한다.
8.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9. (공정법 제2조 8의2)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당해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말한다.

10. “여신”이라 함은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말한다.

제2장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 그리고 경쟁제한적 산업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기타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구조를 조사하여 공표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항에 의한 시장구조의 조사·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조항신설 : 공정법 제 63조를 앞으로 이동>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승인 기타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에 당해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예규·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예규·고시 등이나 통보 없이 행하여진 승인 기타의 처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5조(공정법 제3조의2) (경쟁제한적 행위의 금지)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경쟁제한적 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삭제>

2. <삭제>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6. 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② 경쟁제한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

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정의) 제7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제7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조(경쟁제한적 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회사분할 청구) <조항 신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심각하고 시장지배적지위가 현저하여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의 정도에 중대한 위해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회사분할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9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경쟁제한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이라 한다)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개정 99.2.5>
2. <삭제>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이하 “영업양수”라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당해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1.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2.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③ 누구든지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으로 기업결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기업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2. <삭제>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결합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에 관한 기준은 공정거래 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공정법 제7조의2)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공정법 제8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삭제>

- 공정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 <삭제>
- 공정법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삭제>
- 공정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삭제>
- 공정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 <삭제>
- 공정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삭제>
- 공정법 제10조의3 삭제 <2001.1.16>
- 공정법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삭제>
- 공정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삭제>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특수관계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증권거래법의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삭제>
3. 제10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새로 설립되는 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으로서 동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제5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 제2호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과 기업결합한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적용범위) 제1항·제3항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신기술사업자와 기업결합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당해 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는 당해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각각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회사설립에의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또는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신고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각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10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에 규정된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항에 규정된 신고기간 이전이라도 당해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삭제>

공정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 <삭제>

공정법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등) <삭제>

공정법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 등) <삭제>

공정법 제14조의3(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 <삭제>

공정법 제14조의4(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삭제>

제13조(탈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10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및 제3항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0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13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

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 [제 10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당해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삭제>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삭제>
 7.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8. 기타 범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0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때에는 당해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정법 제17조(과징금) <삭제>

제15조(공정법 제17조의3) (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 10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 14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매 1일당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만 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제2호의 기업결합을 한 자에 대하여는 매 1일당 2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0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2. 제10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제3호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3. 제10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제4호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영업양수금액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공정법 제18조 제1항)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14조(시정조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정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은 삭제>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17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가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삭제>
9. 제1호 내지 제8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제2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가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연구·기술개발
3. <삭제>
4. <삭제>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삭제>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방법·절차 및 인가사항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규정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⑤ 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동 사업자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8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조항신설 : 공정법 제26조를 앞으로 이동>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7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2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5. 삭제 <99. 2. 5 법5814>

② 제17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정법 제20조(인가절차 등) 삭제 <96.12.30>

제19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5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각호의 1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1조(공정법 제22조의2)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9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0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협조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2조(공정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신설>
 -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 ④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수정 및 삭

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공정법 제24조의2)(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공정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경쟁법 제18조 이동>
- 공정법 제27조(시정조치) <경쟁법 제19조 제2항으로 편입>
- 공정법 제28조(과징금) <경쟁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편입>
- 공정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삭제>
- 공정법 제30조(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수정) <삭제>
- 공정법 제31조(시정조치) <삭제>
- 공정법 제31조의2(과징금) <삭제>
- 공정법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삭제>
- 공정법 제33조(국제계약의 심사요청) <삭제>
- 공정법 제34조(시정조치) <삭제>
- 공정법 제34조의2(과징금) <삭제>

제5장 전담기구

제2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① 제1항 : 이 법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신설>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삭제>
3.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5. <삭제>
6.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제27조(공정법 제37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 중 2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2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다. 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하여 경험이 있는 2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자
 3. 대학에서 법률학, 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던 자
 4.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④ 위원장·부위원장 및 제40조(사무처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9조(정부위원)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제28조(공정법 제37조의2) (회의의 구분)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와 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29조(공정법 제37조의3) (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① 전원회의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고시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2. 제47조(이의신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4.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5.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기타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회의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9.2.5>

제31조(위원의 임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3조(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34조(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전원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심리·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6조(공정법 제43조의2) (심판정의 질서유지) 전원회의 및 소회의 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참관인 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사건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
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사건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38조(위원의 서명·날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그 의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9조(별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별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0조(사무처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제41조(조직에 관한 규정) ①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조사 등의 절차

제42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요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요나 물건의 영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4조(권한의 위임·위탁)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대

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제44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5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6조(공정법 제52조의2) (자료열람요구 등) 당사자 또는 이해관

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를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7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공정법 제53조의2)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47조(이의신청)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9조(금지청구) <조항신설> 제5조(경쟁제한적 행위의 금지), 제17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8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2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의하여

그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피해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소의 제기) ①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51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50조(소의 제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의 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제52조(공정법 제55조의2) (사건처리절차 등)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의2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제53조(공정법 제55조의3) (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공정법 제55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공정법 제55조의5)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안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 대하여 과징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과징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⑥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공정법 제55조의6) (과징금 환급가산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장 손해배상

제57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58조(공정법 제56조의2) (기록의 송부 등) 제57조(손해배상책임)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공정법 제57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등) <삭제>

제8장 적용제외

제59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조합의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공정법 제61조 삭제 <96.12.30>

제9장 보칙

제62조(비밀업수의 의무)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정법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경쟁법 제4조로 이동>

제63조(관계기관 등의 장의 협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제64조(권한의 위임·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장 벌 칙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제17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동행위를 한 자
 10. <삭제>
-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6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96.12.30>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제7조(시정조치), 제14조(시정조치)제1항, 제19조(시정조치), 제23조(시정조치), 제19조(시정조치), 제31조(시정조치) 또는

제34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제30조(재판매가격유지의 수정) 삭제>

7. <삭제>

제6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자

6.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6항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94.12.22>

8. 삭제 <99.2.5>

제68조(벌칙) ①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2조(비밀엄수 의무)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공정법 제69조의2)(과태료)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6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삭제>

2.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삭제>

4.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6.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 정보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 제36조(심판정의 질서유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96. 12. 30>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0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벌칙) 내지 제67조(벌칙)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공정법 제71조(고발) <삭제>

제4장

공정거래법 신·구조문 대비표

